



합성수지 포장재 규제 정책

Regulation Policy of plastic packaging material

환경부 자료 제공

합성수지로 된 컵라면 용기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종이로 바뀐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컵라면 총생산량의 20%를 종이나 텁프몰드 등 환경친화적 재질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는 생산량의 30% 이상, 2007년부터 35% 이상 환경친화적 재질을 써야 한다. 올해 국내 컵라면 생산량 9억2,000만개 중 1억8,000만개가 종이 등의 용기로 대체된다. 본지에서는 합성수지 포장재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1. 합성수지 포장재 규제 정책

환경부는 PVC는 염소와 여러 물질이 첨가돼 제조 과정에서 다이옥신, 장기 체류 오염물질 등이 공기, 토양으로 유출되고 매립시 독성첨가물이 유출되고 매립시 독성첨가물이 유출되며 소각시 다이옥신과 중금속을 배출, PVC는 구성 성분이 균일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수지 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도모하며 PVC 재질 포장재의 사용 규제 수단을 도입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PVC 수축포장재와 PVC를 첨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 2004년 1월부터는 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를 포장하는 포장재에 대하여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 PVC) 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외국에서도 PVC 재질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실시(스위스 : PVC 사용 금지(91), 벨기에 : 음료용기 PVC 사용 금지(95), 네덜란드 : 병뚜껑 및 기타 포장재 PVC 사용 금지, 체코 : PVC 사용 금지(01), 일본 : PVC 대체 재질 사용(00))하고 있다. 또한 유명 화장품, 세제, 가정용품 제조업체(Wella(독일), Shiseido(일본), Neal Yard Rerndies(영국), Helene Curtis Inc(미국))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용금지를 발표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규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업계의 자발적 사용 금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1.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정책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는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

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연차별로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제도로서, 1996년 7월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지침'을 고시에 의해 도입했으며 2003년 4월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그 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품을 계란난좌·팩, 사과·배 받침접시, 농·축·수산부류 받침접시, 면류 용기로 규정하고 줄이기 방법을 재질대체와 사용량 감량으로 한정(재활용, 회수·소각 제외)하고, 줄이기 기준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연계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 연차별 줄이기 제도의 실효성이 증진되도록 하였다.

줄이기 기준은 동일 포장재에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가 동시에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 면류 용기는 6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하고, 계란난좌는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계란팩은 8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배·사과 받침접시는 6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농·축·수산부류 받침접시는 10% 이상으로 새로이 규정했다.

이와 같이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하향 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당초 '96년도에 연차별 감량화 기준을 설정할 때 2002년도 목표치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② 종전 '감량화 목표율'을 '줄이기 기준'으로 변경하여 재활용량 및 회수·소각량이 제외되어 기준이 강화되었다.

③ 줄이기 기준 중 사용량 감량 부분을 전년도

대비 사용량 감량만으로 한정하여 결과적으로 재질 대체만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강화된다.

④ 관련 생산자에게 줄이기 의무 이외에 생산자 재활용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줄이기 방법 변경과 줄이기 기준 조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질대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예를 들어 컵라면 용기의 경우 6개 라면제조업체에서 2002년도에 총 생산량 9억2963만3000개 중 5514만5000개를 종이용기로 생산하였으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8532만7000개(순종 1억3018만2000 개)를 종이용기 등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 합성수지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EPR 대상 품목은 기존의 예치금 품목 이외에 신규로 플라스틱 포장재, 휴대폰, 오디오,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 기존의 원료부담금인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폐지되고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합성수지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품목'으로 편입, 나머지 합성수지 제품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합성수지 포장재 중에서도 컵라면 용기, 받침접시 등 용기류는 '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품목으로 도입, 우선 실시하였고, 봉지·봉투 등 필름류 포장재는 재활용기반을 확충하여 '04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50